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27 선고 2022가단1058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한호, 김바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균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1. 8.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20차전2455호로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이 이에 이의하지 않아 ‘C은 원고에게 86,261,234원 및 그 중 19,805,210원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위 지급명령이 2020. 7. 17. 확정되었다.

나. C의 아버지인 D은 2021. 2. 1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및 위 C을 포함한 자녀들 5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다.

다. C은 피고와 사이에 D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13 지분을 피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8.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1. 2.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제560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2/13 지분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D은 1997. 무렵 C에게 생전 증여를 통해 'E'라는 액세서리 판매점 개업자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C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한편 D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액 59,500,000원) 및 충청남도 아산시 F 답 3,546.8㎡(가액 86,921,800원)가 있는데,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한 C의 법정상속지분인 2/13에 해당하는 가액은 22,526,430원[=(59,500,000원 + 86,921,800원)×2/13]으로서 위 특별수익인 35,000,000원에도 미달하여 사실상 C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 중 C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계약의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C에게 35,000,000원을 증여하였다거나, D이 장차 상속인으로 될 C에게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로 미리 준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C이 위 금액 상당의 특별수익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21. 8. 23.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C의 지분인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별지